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3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박 정 · 장철민 · 김영환
김성희 · 이기현 · 윤후덕
김현정 · 김주영 · 강득구
허종식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그러나 지난해 통일부의 기본계획 마련 과정, 관련 지자체의 연구용역에서 현행법이 타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한 목적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

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를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로, “취득세”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서”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을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를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로, “지방세를”을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및 수익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을 할 수 있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u>지방자치단체는</u>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 <u>지방세특례제한법</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u>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 ----- ----- 「 <u>조세특례제한법</u> 」, 「 <u>관세법</u> 」 및 「 <u>지방세특례제한법</u> 」에서-----법 <u>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u>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 <u>초지법</u> 」, 「 <u>산지관리법</u> 」, 「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u> 」, 「 <u>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u> 」,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및 「 <u>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u>기반시설설치비용</u> 및	② ----- ----- ----- ----- ----- ----- ----- ----- 「 <u>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u> 」, 「 <u>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u> 」, 「 <u>농지법</u> 」, 「 <u>환경개선비용 부담법</u> 」 및 「 <u>자연환경보전법</u> 」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
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지
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생략)
<신설>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부담
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
전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
한법」에서-----법인세
· 소득세 · 관세 · 취득세 · 등록
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
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의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감면 및 수익계약에
의한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
부 · 매각을 할 수 있다.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

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